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3
----------	------

2020년 9월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7월 13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함(안 제1조~2조 및 제4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권고(2020.4.2.)한 것으로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u>소외계층</u> 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취약계층</u> ----- -----.
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u>소외계층</u> 출신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u>취약계층</u> ----- ----- ----- -----.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체육 <u>소외계층</u> 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 ----- <u>취약계층</u> ----- ----- ----- -----.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자치법규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 보장’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 중 ‘소외계층’을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분야에 차별적 용어로 판단하고 있음.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소외계층’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 사용되며 「관광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도서관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인권위원회는 ‘소외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판단하여 ‘취약계층’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두 용어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집행부(관광체육국)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동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 의견을 표명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63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4조 중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u>소외계층</u>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취약계층</u> ----- ----- -----.</p>
<p>제2조(정의) “체육복지”란 체육 <u>소외계층</u>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u>취약계층</u>----- ----- ----- -----.</p>
<p>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라 한다)은 체육 <u>소외계층</u>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 ----- <u>취약계층</u> ----- ----- ----- -----.</p>